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(3공구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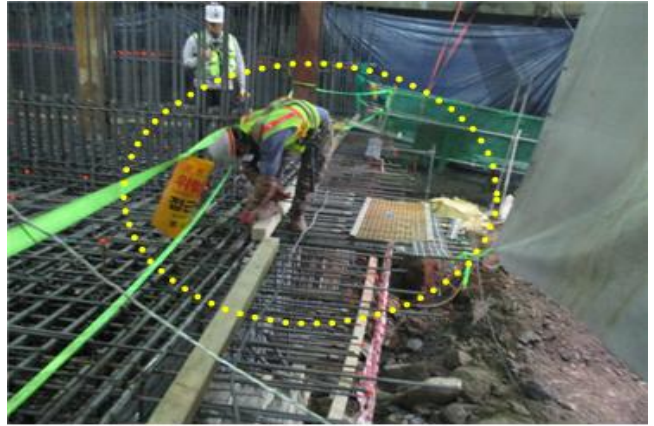
□ 점검일시 : 2020.06.19 (금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박상종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09정거장 기초철근조립 작업자는 조립된 철근 단부에서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고 있어 철근 사이 발빠짐 등에 의한 전도 시 단부 밖으로 전락, 철근 찢림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작업환경에 맞는 적절한 안전시설(작업발판)을 설치 후 작업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보건 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9정거장 기초철근조립 작업장 용단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한 상태에서 작업중으로 용단, 용접 시 발생한 불티에 화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작업환경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, 이를 착용하도록 안전교육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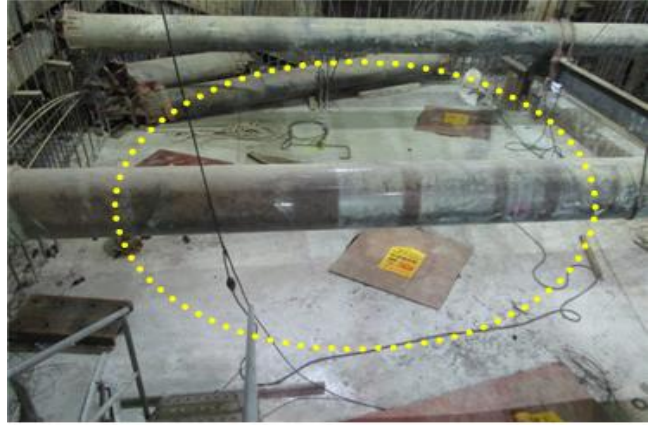
- 110정거장 근로자가 벽체에 거꾸집을 놓고 올라가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 중으로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말비계 또는 이동식비계 등 작업환경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0정거장 개구부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한 덮개는 미 고정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쉽게 이탈할 수 있으니 개구부 설치 시에는 덮개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 갖은 덮개를 설치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환기구 작업장 하부로 내려가는 토사경사 구간은 가설통로가 미설치되어 있고, 주변에 자재가 적치되어 있어 근로자 통행 시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가설경사로 또는 가설계단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9정거장 터널 S/C 투입 배관은 단부가 절단되어 직관인 상태로 S/C 투입시 S/C관 파손 또는 주변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배관 단부를 곡관과 연결하여 S/C가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유도 바람.

